

지원사업규정

제정 2020년 7월 14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활동가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의 원칙)

- ① 재단의 지원사업은 관련 피해자와 단체 및 이해관계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원사업은 신청과 선정과정, 지원 내용과 사업의 성과 및 관련 자료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인권침해 피해자 긴급 지원)

- ① 재단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폭력 또는 제도적·구조적 폭력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조를 위해 크게 기여한 사람(이하 “인권침해 피해자”라 한다.) 가운데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의 사고·상해·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생활이 현저히 곤란해지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활 지원금 또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긴급 지원금은 본인·친족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무국의 실황조사를 거친 다음 업무이사(상임이사 또는 재단의 일상 사무를 집행하는 이사를 말한다.)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의결한다.
- ④ 제3항의 실황조사에는 인권침해의 내용과 이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활동 및 장래 계획,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지원 내용 또는 지원 가능성, 같거나 비슷한 피해자들과 사이의 형평성, 재단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긴급 생활지원금의 금액은 월 [50]만원, 지원기간은 [6개월]을 한도로 필요한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⑥ 긴급 의료지원금은 상해 또는 질병의 진료와 치료(간병비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금액 가운데 본인이 부담하는 실비를 지급하되 1년 동안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동안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긴급 지원금 지원 신청, 실태조사와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이사가 정한다.

제4조 (인권침해 진실규명 지원)

- ① 재단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원하는 금액은 수사·재판기록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인이 작성 또는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조사 및 열람·등사 비용, 참고인 조사·면담 및 문서작성 비용,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으로 한다.
- ③ 재단은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된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규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 연구원을 두거나 관련 단체 또는 개인과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전담 연구원 채용 및 공동사업은 업무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⑤ 그 밖에 인권침해 진실규명 지원 신청과 선정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이사가 정한다.

제5조(인권침해 피해자 활동 지원)

- ① 재단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조직하고 관련 단체와 활동가, 전문가,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한 인권침해 피해자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은 활동비 지원, 사무공간 지원, 물품 지원 등으로 한다.
- ③ 활동비 지원 금액은 [월 100만원], 기간은 [1년]을 상한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정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

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사무공간 지원은 재단 사무실의 여유 공간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1년]을 상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물품 지원은 외부 사무공간을 사용하여 활동하는 인권침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 단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되 연 1회, [50만원]을 상한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 ⑥ 재단으로부터 활동비 또는 사무공간을 지원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정기적으로 활동 내용과 성과를 재단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⑦ 활동비 지원과 사무공간 지원은 업무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물품 지원은 업무이사가 시행한다.
- ⑧ 그 밖에 인권침해 피해자 활동지원 신청과 선정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이사가 정한다.

제6조(인권단체 사업 지원)

- ① 재단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규명, 피해자 구제, 가해자 처벌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피해자단체 또는 인권단체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업 지원은 단체의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한다.
- ③ 제1항의 사업 지원은 해당 단체의 신청을 받아 사무국의 실황조사를 거쳐 업무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공모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④ 사업 지원에 관한 사무국의 실황조사에는 단체의 관련 활동 경력과 성과, 해당 사업을 담당할 활동가의 경력, 해당 사업의 내용과 예상되는 성과 및 한계, 사업 실패의 위험과 지원금 회수 가능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별로 필요한 액수로 정한다.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3]년을 한도로 지원하되 해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이 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단체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의 내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업무이사가 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사업 계획과 진행상황, 담당자, 성과와 장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원인과 대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기적 보고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지출에 관한 장부 작성, 자료 보관과 제출에 관한 사항
 3. 재단 또는 재단의 위임을 받은 전문가에 의한 사업진행 상황과 지원금 지출 장부 및 자료의 검토와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지원 사실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원 사업으로 생산되는 결과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
 6.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계약 위반에 대한 해지와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⑦ 그 밖에 인권단체 사업 지원의 신청과 공모, 심사와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업무이사가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 ①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심사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업무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의결 당시 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종료할 수 있다.